공고 제 1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1일

선남면장 인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83-01-02	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흥4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2-11-21

제 1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선남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2년 11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소	신고사항
이**	이** 1983-01-02	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흥4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배한수 문의전화 : 054-932-1301)

2022년 11월 21일

선남면장 인